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14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180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6. 1. 구청장(감사담당관)

나. 상정의결

-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2023. 6. 14.)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행정국장 정찬식)

가. 제안이유

-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징계시효 만료일을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신고기한 및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권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 부과 사유의 시효규정을 준용(안 제4조).
- 부조리 행위에 대해 공무원 징계시효 만료일 90일 이전까지 신고하도록 개정(안 제4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4.21. ~ 2023.5.11.) 결과,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 안 제4조(신고기한) 제1항은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을 인용하고 이를 근거로 징계시효 만료일을 기준으로 사안에 따라 그 신고기한을 달리 정하도록 한 것임.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1. 6. 8.>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 따라서 기존 3년 또는 5년의 기간 설정과 달리 부조리 경중에 따라 그 신고기한이 보다 더 연장되어 신고하는 주민의 공익적 활동에 이익이 되는 것임. 다만, 징계시효 만료 전 부조리 신고 사건의 엄밀한 조사를 위해 90일이라는 기간을 징계시효 기간 내에 설정한 것임.

- 참고로 90일이라는 기간은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 등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이나 소송을 준비하는 충분한 시간만큼을 부조리 신고 조사 기간으로 보고 이를 준용한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제2항은 기존 내용에 “공소시효 만료일 90일 이전 기간”을 추가하고 가액 구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제1호와 제2호로 나누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공익적 활동인 “부조리 신고” 기간 설정의 합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상위법률에 근거한 기준을 제시하여 신고기한 설정을 하려는 것으로 주민 지향적 조례 일부개정안이라고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0
----------	-----

제출년월일 : 2023. 6. 1.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감사담당관

1. 제안이유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징계시효 만료일을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신고기한 및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 권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부과 사유의 시효규정을 준용(안 제4조)

나. 부조리 행위에 대해 공무원 징계시효 만료일 90일 이전까지 신고하도록 개정(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조례 제정안 : 별첨

(2) 입법예고(2023. 4. 21. ~ 2023. 5. 11.) :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3조의 부조리 신고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 9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수뢰액에 따른 공소시효 만료일 90일 이전에 신고할 수 있다.
 1. 3천만원 이상 : 7년
 2. 1억원 이상 : 15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신고기한)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기한은 행위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는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p> <p>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중대비위가 3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7년, 1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1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p>	<p>제4조(신고기한) ① 제3조의 부조리 신고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 9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수뢰액에 따른 공소시효 만료일 90일 이전에 신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천만원 이상 : 7년 2. 1억원 이상 : 15년